

(재)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이사회에서 의결된 (재)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사무위임전결 규정 일부 개정 규정을 이에 공포한다.

2026년 8월 1일

재단법인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이사장

(재)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규정 제139호

재단법인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사무위임전결 규정 일부 개정안

재단법인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사무위임전결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사무배분의 원칙)의 국장, 센터장을 본부장으로 개정하고 국·센터를 본부로 개정한다.

제6조 관련 별표<위임 전결사항>을 아래와 같이 개정한다.

- 국장, 센터장을 본부장으로 개정하고 경영지원팀을 경영지원팀과 재무회계팀으로 분리하여 위임전결사항을 개정한다.